

離婚에 관한 研究(Ⅱ)

— 濟州道에 있어서의 離婚率과 裁判上離婚에 관한 實態分析 —

Eine Betrachtung über Ehescheidung (Ⅱ)

— Die Analyse des Wirklichen Standes der Ehescheidungsrate
Und der Ehescheidung durch Gericht auf der Che-Ju Insel —

韓 三 寅*

目 次

I. 序 論	4. 離婚當事者の 學歷別分析
II. 濟州道の 離婚率	5. 離婚當事者の 職業別分析
1. 一般的 考察	6. 婚姻繼續期間別分析
2. 全國의 平均 離婚率과의 比較	7. 子女數別分析
3. 離婚率이 높은 要因	8. 離婚事由別分析
III. 裁判上離婚事件에 관한 實態分析	9. 慰藉料 請求額別分析
1. 離婚件數의 推移分析	10. 離婚審判 請求者の 居住地域別 分析
2. 離婚審判請求者の 性別分析	
3. 離婚當事者の 年齡別分析	IV. 結 論

I . 序 論

現行 우리 나라의 離婚의 法制로는 協議上離婚 調停離婚 裁判上離婚의 3種이 있다.¹⁾

前者는 當事者 사이의 離婚意思의 合致를 基礎로 하여 家庭法院의 確認을 받아 戶籍法에 定한 節次에 의한 所管署에의 申告로써 成立하는 離婚이며, 調停離婚이란 離婚請求者가 家庭法院에 裁

*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專任講師

1) 이에 관한 詳細는 拙稿, "離婚에 관한 研究(I), 離婚法의 變遷·內容·問題點,"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19輯(社會篇), 1984, pp. 75-101 參照.

判上離婚을 請求하는 경우 家庭法院의 調停에 의해 當事者 사이에 離婚에 관한 合意가 이뤄짐으로써 離婚이 成立하는 것을 말하며, 後者는 앞서의 調停이 不成立하는 경우와 法院이 調停에 回附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여 바로 審判에 回附한 때에 家庭法院의 審判에 의해 離婚이 이뤄지는 制度이다. 2)

무릇 “法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는 法哲學上의 根本問題로서 그 概念定立은 至難한 것³⁾ 이기는 하나, 法이란 人間의 社會生活關係에서 생기는 社會的 現象(事實)을 正義와 衡平의 見地에서 強制的으로 規律하기 위하여 存在하는 制度라 할 것이므로, 法이 制度로서의 現實인 規範의 價値가 있는나와 與否를 判斷하려면 우선 그 規律의 對象이 되는 社會的 現象에 대한 眞實(實體) 把握이 先行되어야 하고, 이어서 法이 그 社會的 現象에 대하여 어떠한 作用을 하고 있는나를 發見하여야만 한다. 4) 바로 이러한 視角(Perspective)에서 볼 때에 社會的 現象으로서의 離婚의 實態를 調査·分析하는 것은 離婚法研究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接近方法이라 볼 수 있다. 5)

筆者는 이미 法解釋學的인 視角에서 離婚法을 考察한 바 있거니와⁶⁾ 本稿는 그 後續으로서 法社會學的 接近方法(Socio-legal Study)에 의한 離婚法의 研究가 되는 셈이다.

本稿가 다루는 離婚의 實態調査의 範圍는 濟州道로 限定하였고, 法社會學的 接近方法의 一般的인 것 들, 즉 觀察(observation) 인터뷰(interview) 設問調査(survey) 중에서 주로 各種의 統計資料와 濟州地方法院의 離婚事件 原因別表(濟州地方法院年譜)를 土臺로 하여 이를 여러 角度에서 分析하는 觀察의 方法을 취했다. 7) 從來 濟州道の 離婚率 내지는 離婚實態에 관한 研究로는 李兌榮 博士의 “韓國離婚研究”를 代表的으로 들 수 있고, 그 外에 部分的 研究이기는 하나 崔在錫 教授의 “濟州島의 親族組織”과 朴光緒 教授팀의 “濟州慣行調査記” 등⁸⁾ 을 들 수 있다.

2) 上揭論文, p. 75.

3) 黃山德, 「增補版 法哲學講義」, 博英社, 1972, p. 15.

4) 李兌榮, 「韓國離婚研究」, 梨大出版部, 1968, p. 23.

5) 同旨: 上揭書, p. 23.

6) 拙稿. 前揭論文, pp. 67-107 參照.

7) 應당 協議上離婚과 調停離婚의 경우도 觀察의 對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이들의 경우에는 離婚當事者와 interview하는 등 個個의 事件을 直接 探查하지 않는 限 누구가 무슨 事由로 離婚을 했는지, 慰籍料와 子女의 養育問題는 어떻게 處理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本稿의 研究範圍에서는 이를 빼기로 하고, 오로지 裁判上離婚事件만을 다루기로 한다.

8) 李兌榮 博士의 “韓國離婚研究(梨大出版部, 1968)”는 그의 博士學位論文으로서 1967~1969年間の 濟州地方法院을 經由한 大法院의 離婚判例와 1960.1.1~1965.12.31까지의 濟州地方法院의 離婚判例, 同法院을 經유한 大法院의 離婚判例를 토대로 하여, ① 濟州道の 離婚率, ② 離婚當事者의 共通의 特徵, ③ 離婚原因의 分析·檢討 등을 잘 紹介해 주고 있다.

崔在錫 教授의 “濟州島의 親族組織(一志社, 1979, pp. 171-188)”은 參與觀察(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survey 등의 方法으로 濟州道の 離婚實態를 추적함으로써 單편적이나나 濟州道の 離婚의 特徵을 紹介해 주고 있다.

朴光緒 教授팀의 “濟州慣行調査記(法政論叢 15輯, 中央大 法政大 學生會, 1962, pp. 181-188)”는 interview에 의한 離婚의 實態를 單편적으로 紹介해 주고 있다.

本稿는 이러한 先行資料를 批判的인 觀點에서 參考하였 으며, 濟州地方法院年譜· 濟州統計年譜 및 各種의 統計資料를 根據로 하여,

첫째, 濟州道の 離婚率을 各年代別(1975 ~ 1984 年)로 算出· 分析· 展望하고 이를 全國의 離婚率과 比較함으로써 離婚에 影響을 주는 濟州道の 特殊要因을 밝히며,

둘째, 濟州地方法院이 지난 10年間 다룬 裁判上離婚事件의 原因別表(1975 ~ 1984 年間の 濟州地方法院年譜)를 土臺로 하여 離婚審判請求者의 性別, 離婚當事者의 年齡別, 學歷別, 職業別, 婚姻繼續期間別, 子女數別, 離婚事由別, 慰籍料請求額別, 離婚審判 請求者의 居住地域別現況 등을 分析· 記述(description)하여 이를 說明(explanation)함으로써 窮極的으로 離婚의 濟州道의 特徵을 發見하는 것을 그 意圖로 한다.

II . 濟州道の 離婚率

1. 一般的 考察

가. 離婚率의 算出方法

産業社會가 招來한 價値觀· 倫理觀· 道德觀의 變化와 이로 因한 自己意識偏重· 配偶者意識缺如는 夫婦間의 葛藤· 마찰을 助長함으로써 婚姻의 破綻(Breakdown of Marriage)을 加重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婚姻의 破綻은 家庭의 安定性을 害치는 障礙要因임에는 틀림없으나 婚姻破綻의 實數가 그대로 離婚率에 反映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婚姻破綻의 現實下에서도 離婚을 하지 않고 그대로 共生해 나가는 夫婦가 많음을 생각하라), 婚姻破綻의 增加率과 離婚率의 增加는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는다.⁹⁾ 그러나 무릇 離婚이란 婚姻한 男女(夫婦) 사이의 身分關係의 解消(dissolution of the marriage)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離婚率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家庭의 安定性의 沮害의 程度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一般的으로 離婚의 增減을 測定하는 方法으로는, 첫째 離婚의 絕對數(an absolute number of divorce), 둘째 婚姻數에 比例한 離婚數(Number of Divorce per Marriage), 셋째 人口數에 比例한 離婚數(Rate of Divorces per 1000 Population)의 세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 人口가 增加하면 그만큼 離婚件數도 增加할 것은 自明한 일이므로, 離婚의 絕對數으로써 離婚의 增減을 測定하려는 첫째의 方法은 離婚率의 算出方法으로서는 不適切하며, 그리고

9) 李兌榮, 前揭書, p. 25.

婚姻한 者 가운데서 몇명이 離婚했는가를 把握할 수 있는 둘째의 方法도 - 離婚當事者가 반드시 當該年度에 婚姻한 夫婦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離婚의 增減을 正確히 說明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이 人口 千에 比例한 離婚數의 比率을 離婚率로 理解하는 立場¹⁰⁾은 妥當하다 할 것이므로, 세계의 方法이 離婚率의 算出方法으로서는 最適이라 할 것이다. 다만 本稱에서는 多角的 考察을 하기 위해 人口 千에 대한 離婚率과 함께 婚姻數에 대한 離婚率도 算出·觀察하기로 한다.

나. 1975 ~ 1984 年間の 離婚率

앞에서 設示한 바와 같이 現行 우리 나라의 離婚의 法制로는 協議上離婚 調停離婚 裁判上離婚의 3種이 있거나 이들은 모두 戶籍法이 定하는 바에 의한 申告¹¹⁾가 있어야만 離婚으로서의 效力이 發生하는 것이므로, 各市의 洞 邑·面事務所에의 離婚申告를 基礎로 하여 處理된 “濟州統計年譜”은 離婚의 「實態記載」에 관한 限 信賴性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土臺로 하여 <表 I의 1>을 作成하였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現象(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表 I의 1> 濟州道の 離婚率

{ ① 人口 1000에 대한 離婚率
② 婚姻에 대한 離婚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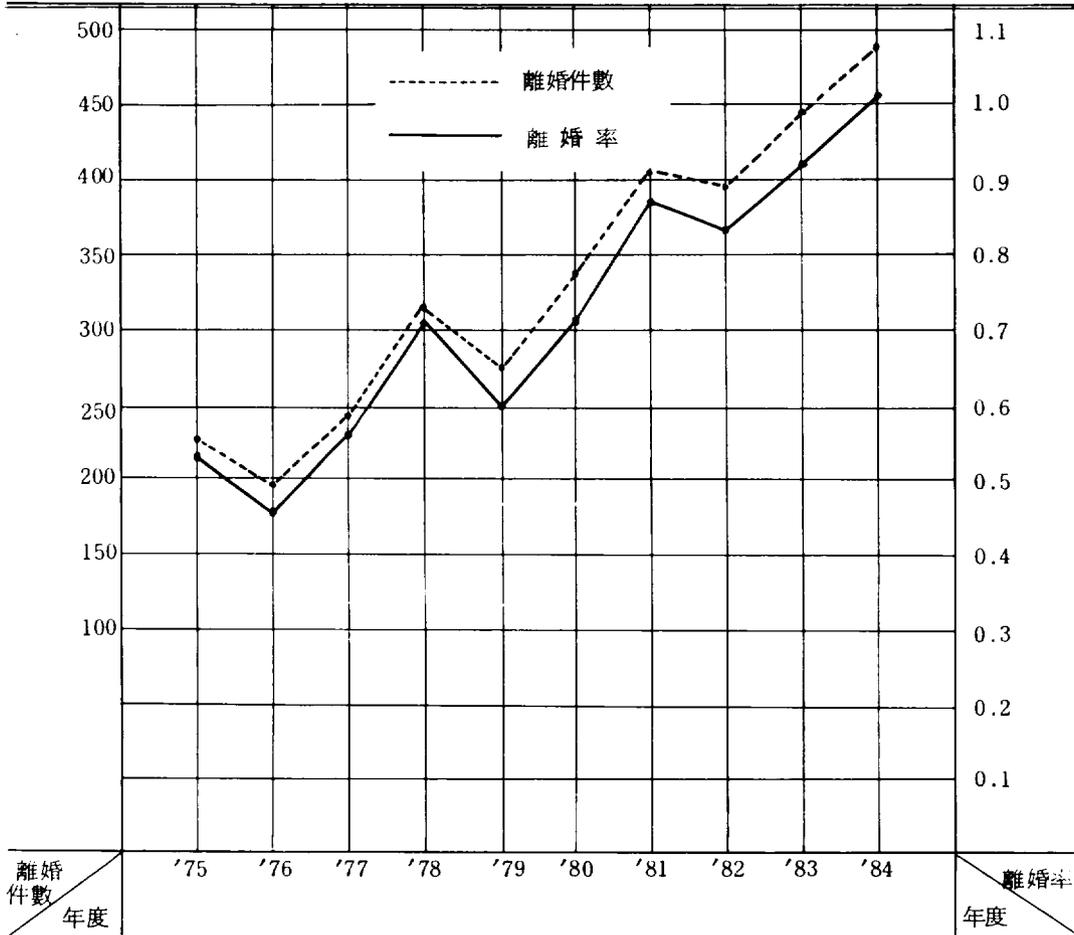
年度別	總人口數	婚姻數	離婚數	人口에대한 婚姻率	人口에대한 離婚率	婚姻에대한 離婚率 (%)	도민 1인당 총 생산 (경상가액)	도민 1인당 소득증가율 (%) (경상가액 기준)
1975	412,021	2,691	222	6.53	0.53	8.2	267,626원 (\$ 553)	31.9
1976	420,830	2,793	193	6.63	0.45	6.9	284,578원 (\$ 588)	6.3
1977	431,897	2,666	242	6.17	0.56	9.1	382,811원 (\$ 791)	34.5
1978	443,708	3,436	316	7.74	0.71	9.2	514,892원 (\$ 1,064)	34.5
1979	456,988	3,650	275	7.98	0.60	7.5	599,519원 (\$ 1,239)	16.4
1980	462,755	4,542	331	9.81	0.71	7.3	774,581원 (\$ 1,275)	2.9
1981	467,876	4,477	408	9.56	0.87	9.1	954,751원 (\$ 1,402)	9.9
1982	473,967	4,219	397	8.90	0.83	9.4	1,128,123원 (\$ 1,542)	9.9
1983	477,861	4,943	442	10.34	0.92	8.9	1,254,000원 (\$ 1,672)	8.4
1984	482,031	4,169	488	8.64	1.01	11.7	1,504,000원 (\$ 1,880)	12.4

備考: 濟州道, 제 24회 제주통계연보, 1984, pp, 62-67 (1. 인구추이 5. 호적에 의한 인구동태신고)參照
1. 總人口數 중 1984 年度分은 '84 센서스 人口調査에 의한 數임.
2. 婚姻 및 離婚數 중 1975-1977 年度分은 '83. E. P. P.에 의한 數임.

1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Chab. 4-1-1-27, Persons AND Family, p. 69.
11) 協議上離婚의 경우에는 戶籍法 §79, 同法 §79의 2에 의한 申告가, 調停離婚 및 裁判上離婚의 경우에는 戶籍法 §81. §63에 의한 申告가 있어야 한다.

첫째, 人口에 대한 離婚率을 보면, 觀察의 첫 해인 1975年의 경우 離婚件數 222에 離婚率 0.53을 나타냄으로써 人口 10萬명 중에서 53명씩 離婚을 한 것으로 把握할 수 있으며, 1978년에는 離婚件數 316에 離婚率 0.71, 1981년에는 離婚件數 408에 離婚率 0.87, 1984년에는 離婚件數 488에 離婚率은 1.01에 達함으로써 이제 人口 1000명 중에서 1명씩 離婚을 한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그리고 <表 I의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1976年 1979年 1982年度처럼 離婚의 絶對數와 離婚率이 當該前年度에 비해 減少한 해도 있었으나, 濟州道에 있어서 지난 10年間('75-'84)의 離婚의 絶對數와 人口에 대한 離婚率은 해마다 繼續 增加一路를 걸어왔음을 分明히 알 수 있다.

<表 I의 2> 離婚件數 및 離婚率 (단위: 명) (인구 1000명에 대한)



備考: <表 I의 1> 參照

둘째, 婚姻에 대한 離婚率도 1975年의 경우 8.2%이던 것이 1978년에는 9.2%로, 다시 1984년에는 무려 11.7%를 나타냄으로써 지난 10年間 6.9%에서 11.7%線으로 增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論者의 視角에 따라서는 이러한 現象(實態)을 解釋함에 있어서 婚姻한 夫婦 100쌍 중에서 11.7쌍이 離婚을 하는 셈이라는 說明¹²⁾도 可能할 것이다. 婚姻에 대한 離婚率이 離婚의 增減現象을 正確히 測定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婚姻한 夫婦 중에서 離婚하는 比率이 해마다 增加趨勢에 있음은 分明하다 할 것이다.

세째, <表 I의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絕對的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經濟成長과 離婚의 絕對數 및 離婚率의 增加는 相關關係가 있음을 指摘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道民 1人當 所得增加率이 31.9%이었던 1975年의 경우 離婚件數 222에 離婚率은 0.53이던 것이 所得增加率이 34.5%이었던 1978년에는 離婚件數 316에 離婚率은 0.71로 나타났고, 所得增加率 9.9%이었던 1981년에는 離婚件數 408에 離婚率은 0.83이고, 12.4%(推定)로 所得이 增加한 1984年의 경우에는 離婚件數 488에 離婚率은 1.01로 나타났다. 所得의 增加와 離婚의 絕對數 및 離婚率의 增加는 相互關聯을 이루고 있다는 指摘이 옳은 觀察이라면 그 理由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 點은 뒤에 說明할 裁判上離婚事件에 관한 離婚當事者의 性別·職業別, 離婚請求者의 慰籍料請求額別 現況分析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즉 近代社會가 이룩한 女性의 解放은 女性으로 하여금 權利를 自覺케 하였을 뿐 아니라 職場·生業으로 進出하여 經濟的 自立의 機會를 얻음으로써(이 點은 濟州道의 경우 현저하다¹³⁾) 男子만이 經濟的 能力者라는 封建的 拘束을 타파하기에 이르렀고¹⁴⁾ 經濟的으로 自立한 女性들은 婚姻의 本質이 喪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生活能力이 없었기 때문에 內容없는 婚姻生活를 堪忍해야만 했던 從來의 地位¹⁵⁾에서 벗어나 果敢히 離婚을 決心하여 이를 實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본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1975-1984年間的 濟州道의 離婚率은 <表 I의 4>에 나타난 1957-1965年間的 離婚率처럼 그 增減의 幅이 큰 것이 아니라 대체로 漸進的인 增加一路를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離婚率의 增加現象은 비단 濟州道에만 局限된 것은 아니고 全世界的·全國的인 現象¹⁶⁾인 것이다. 離婚增加의 原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즉 1960-1970年代의 前半에 걸쳐 各國에서의 離婚法의 自由化

12) 濟州新聞, 1984. 9/17, p. 7 參照. 그러나 濟州新聞이 다른 方法(婚姻한 人口數를 基準으로 한 離婚數의 比率)은 婚姻한 者 중에서 離婚한 者가 몇 명인가를 把握케 할 수 있다는 點에서 合理的이고 原則的인! 離婚率의 算出方法이라고 할 수 있으나, 離婚當事者가 반드시 當該年度에 婚姻한 夫婦라고는 분수 없으므로 婚姻數에 대한 離婚數의 比率은 正確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

李兌榮, 前揭書, p. 25. 參照

13) 이에 관한 詳細는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p. 183 參照.

14) 李兌榮, 前揭書, p. 42.

15) 加藤一郎, 圖說家族法, 有斐閣, 1963. pp. 30-31 參照.

16) 이에 관하여는 本稿 pp.60~61, 參照

〈表 I 의 3〉 濟州道の 離婚率

{ 人口數에 대한 婚姻數
 人口數에 대한 離婚數
 婚姻數에 대한 離婚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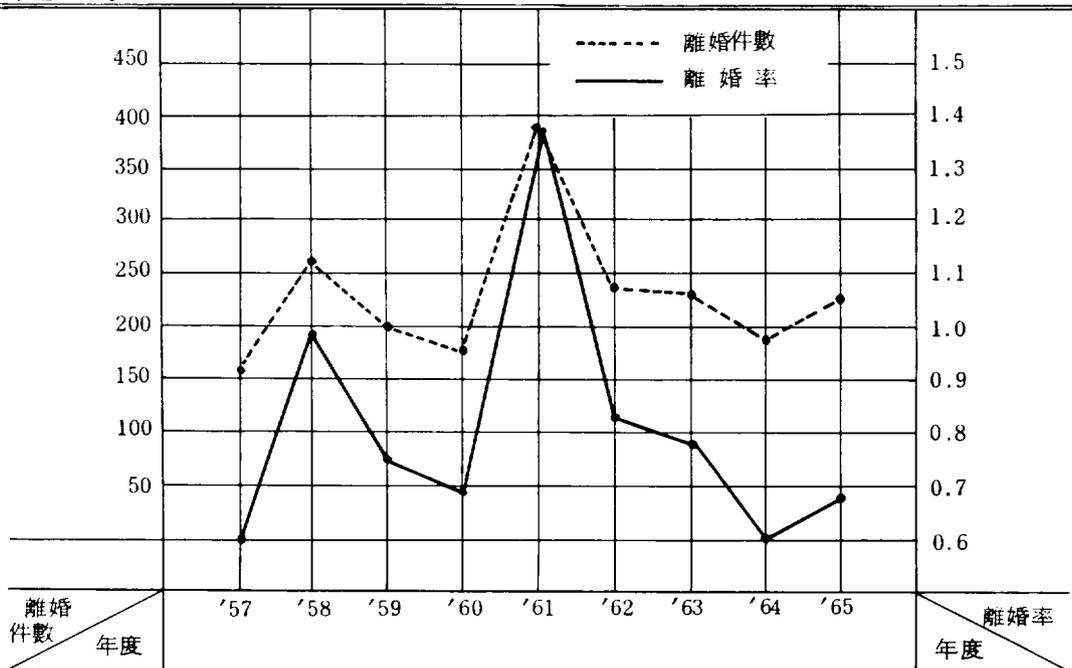
年度別	總人口數	婚姻數	離婚數	人口에 대한 離婚率	婚姻에 대한 離婚率 (%)
1957	258,961	1,380	156	0.60	11.3
1958	263,901	4,940	256	0.97	5.2
1959	268,740	3,182	202	0.75	6.3
1960	281,663	1,611	174	0.69	12.0
1961	281,518	6,696	386	1.37	5.8
1962	293,101	2,778	244	0.83	8.8
1963	307,519	3,468	241	0.78	6.9
1964	318,358	2,013	191	0.60	7.3
1965	326,405	2,466	221	0.68	9.0
1966		2,781	207		7.4

備考: 李兌榮, 韓國離婚研究, 梨大出版部, 1968, p. 33에서 引用.

〈表 I 의 4〉 離婚件數 및 離婚率

(단위: 명)

(人口 1000명에 대한)



備考: 〈表 I 의 3〉 參照

方向에로의 改正에 의한 離婚의 容易化를 들면서 그 基盤에는 夫婦關係의 葛藤·對立·破綻과 그러한 事態의 放置 보다는 깨끗이 清算하여 再生을 바라는 離婚自由化에로의 輿論의 作用과 從來의 永續의 婚姻觀에 대한 市民意識의 改革을 그 原動力으로 보는 見解¹⁷⁾도 있으나, 女性의 經濟的 自立의 確保로 인한 女性의 經濟的 地位의 向上에 있다고 보는 것¹⁸⁾이 適切한 表現일 것이다.

한편 濟州道の 離婚率은 앞으로 계속 上昇할 것으로 展望되는데, 그 理由는 첫째 濟州道の 女性은 生活能力이 強하기 때문에 離婚 후의 生活에 自信을 얻기됨으로써 破綻된 婚姻生活의 持續을 忍耐하기 보다는 차라리 夫婦로서의 身分關係의 解消를 決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둘째는 濟州道の 核家族制的 離婚觀이 漸次的으로 個人主義의 自由主義의 離婚觀으로 轉化되어 갈 것으로 豫測되어지기 때문이다.

2. 全國의 平均 離婚率과의 比較

<表Ⅰ의 1>과 <表Ⅱ의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5 - 1982年間の 濟州도에 있어서의 離婚率과 全國 平均離婚率을 對照·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은 現象(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表Ⅱ의 1>

全國離婚率

- { ① 人口 1000에 대한 離婚率
② 人口에 대한 婚姻率
③ 婚姻에 대한 離婚率

年度別	총인구 數 (단위 1000)	婚 姻 數	離 婚 數	人口에 대한 離 婚 率	人口에 대한 婚 姻 率	婚姻에 대한 離婚率 (%)
1974	34,692	259,017	13,956	0.40	7.46	5.4
1975	35,281	281,019	16,081	0.45	7.96	5.7
1976	35,849	282,372	16,650	0.46	7.87	5.9
1977	36,412	298,634	19,694	0.54	8.20	6.6
1978	36,960	333,127	18,310	0.49	9.01	5.5
1979	37,534	339,419	15,222	0.40	9.04	4.5
1980	38,124	369,871	19,695	0.51	9.70	5.3
1981	38,723	321,774	20,009	0.51	8.30	6.2
1982	39,331	204,305	17,547	0.44	5.19	8.6
1983	39,951					
1984	40,430					

- 備考: 1. 本表의 總人口는 1984 聯合年鑑, p. 592 參照.
2. 本表의 婚姻件數와 離婚件數는 경제기획원, 인구동태통계, 1983, pp. 20-21 參照.
3. 1984年의 總人口는 '84.10.1 상주인구조사 結果의 간이집계임.

17) 朴秉濂, "韓國離婚法의 特色", 「民事裁判의 研究」(Ⅳ), 經文社, 1982, p. 259.

18) 同旨: 鄭鎭瑛, "離婚原因에 關하여", 「裁判資料 第18輯」, 法院行政處, 1983, p. 308; 韓瑋熙, 「比較離婚法」, 一潮閣, 1982, p. 2.

즉 人口에 比例하거나 婚姻에 比例하여 볼 때에 濟州道の 離婚率은 全國 平均離婚率을 항상 웃돌고 있다. 특히 1982年의 경우 人口에 대한 離婚率은 0.83 으로서 같은 해의 全國 平均離婚率인 0.44 에 比하면 약 1.89 倍가 되며, 婚姻에 대한 離婚率도 1982年의 경우 9.4 %를 나타냄으로써 같은 해의 全國 平均値인 8.6 %에 比하면 약 1 倍나 높다. 이처럼 濟州道の 離婚率이 어느 해를 막론하고 全國 平均離婚率 보다 높은 理由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¹⁹⁾

3. 離婚率이 높은 要因

濟州道の 離婚率이 적어도 全國 平均値 보다 높은 要因이 어디에 있는지는 協議上離婚·調停離婚·裁判上離婚當事者와의 인터뷰·설문조사 내지는 參與觀察 등의 方法을 통해서만 具體的으로 밝혀질 것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첫째는, 濟州道女性의 經濟的 自立性 내지는 生活能力의 強靱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濟州道女性의 經濟的 自立性은 어디에서 緣由하는 것일까? 崔在錫 教授에 의하면, 濟州島女性들의 屋外活動이 활발한 理由로서 傳統的인 儒教的 家族價値觀의 缺如 내지는 稀薄을 들면서 ²⁰⁾ 바로 그러한 理由가 濟州島의 離婚率을 높이는 要因으로 보고 있지만, ²¹⁾ 儒教的 家族價値觀이 缺如된 社會일수록 女子 屋外活動이 활발하게 된다고 하여 바로 그러한 論理가 濟州道에도 適用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컨대 우리 先祖代의 濟州島는 文字 그대로의 絶海孤島로서 薄土 그 自體였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狀況 아래에서 夫는 家長權(Väterliche Gewalt)을 쥐어 經濟力을 調達하는 者로서 妻는 이른바 “열쇠의 權能(Schlüsselgewalt)”을 가진 主婦(Hausfrau)로서의 役割分擔을 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生存을 위한 經濟行爲는 人間活動의 基礎인 것이므로, 妻도 夫와 같이 田作農業을 돕거나 또는 潛水漁業을 主導함으로써 夫婦는 家政經濟를 調達함에 있어서 相扶相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女性의 勤勉함 내지는 自生力이 濟州道女性의 經濟的 自立性으로 體質化·習性化되어진 것이 아닌가 본다. 어떻게 濟州道の 女性은 經濟的 自立性이 強하기 때문에 離婚 후의 生活에 自信을 얻게 되고 또한 子の 養育者로 指定받을 수도 있게 됨으로써 生活方途가 없으면 男便이 逐出하지 않는 이상 離婚을 할 수 없는 一般의인 妻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容易하게 離婚을 執行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點이 濟州道の 離婚率을 높게 하는

19) 李兌榮, 前掲書, p.33에 의하면 濟州道가 全國에서 離婚率이 가장 높은 곳(1965年 當時까지)으로 指摘되었는데, 20年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장 높으냐의 與否를 밝히는 것은 後日의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20) 崔在錫, 前掲書, p.188.

21) 上掲書, p.187.

要因이 아닌가 본다.²²⁾

둘째는, 濟州道の 核家族制의 離婚觀을 들 수 있다. 一般的으로 家父長權이 강한 大家族制度 아래에서는 成人을 포함한 모든 家族構成員은 家父長權의 干涉·統制를 받기 때문에 大家族制度의 離婚觀은 非個人主義的 不自由主義의 일 수 밖에 없으므로 離婚은 그만큼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核家族의 形態를 취하고 있는 濟州道에 있어서는 家父長權이 弱하기 때문에²³⁾ 離婚當事者의 意思가 尊重되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核家族制의 離婚觀은 필경 個人主義的·自由主義的 離婚觀으로 轉化됨으로써 離婚은 容易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點은 濟州道에 있어서의 離婚率을 높게 하는 하나의 要因이 될 것이다.

셋째는, 離婚을 不道德視하는 傳統的인 儒敎的 價値觀이 強하지 못한 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儒敎的 價値觀이 支配했던 傳統的인 家父長制社會에서는 이른바 七出·棄妻·義絶·逆家離婚 등과 같은 妻에게 不利한 離婚制度²⁴⁾ 는 있었으면서도 妻의 意思를 尊重하는 離婚·改嫁는 결코 認定되지 않았다. 요컨대 儒敎的 價値觀이 강한 社會에서는 離婚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離婚率은 높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論理가 妥當하다면, 濟州道の 離婚率이 높은 要因의 하나로서, 妻의 意思를 考慮하는 離婚을 容認하지 않는 儒敎的 價値觀이 強하지 못하기 때문에 生活能力이 강한 濟州道の 女性으로서는 離婚에 順應하거나 (夫가 請求人일 경우) 또는 離婚을 主導하게 (妻가 請求人일 경우) 됨으로써 離婚率은 높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다.

Ⅲ. 裁判上離婚事件에 관한 實態分析

1975-1984 年間の 濟州地方法院年譜에 나타난 離婚事件原因別表를 土臺로 하여 아래의 여러 各度에서 裁判上離婚事件의 實態를 分析하기로 한다.

1. 離婚件數의 推移分析

1975-1984 年間の 濟州地方法院年譜에 나타난 資料에 의해 <表Ⅲ의 1>과 <表Ⅲ의 2>를 作成하였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즉 '77年 '78年 '82年 '83年 등과 같이 離婚件數가 當該前年度에 비해 다소 減少한 해도 있

22) 同旨: 李兌榮, 前掲書, p. 33 參照.

23) 核家族의 形態에서는 父母와 婚姻한 子息 사이에 同居場所의 分離가 이뤄짐으로 家父長權이 弱化될 것은 當然하다.

24) 이에 관한 詳細는 拙稿, 前掲論文, pp. 72-73. 參照.

있으나, 지난 10年間の 裁判上 離婚件數는 대체로 增加趨勢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觀察의 첫 해인 1975年의 102件에 비해 1984年에는 219件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10年 사이에 離婚件數는 약 2.2배나 增加했음을 알 수 있다.

年度別로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인 해는 1984年으로서 1983年에 비해 약 1.5배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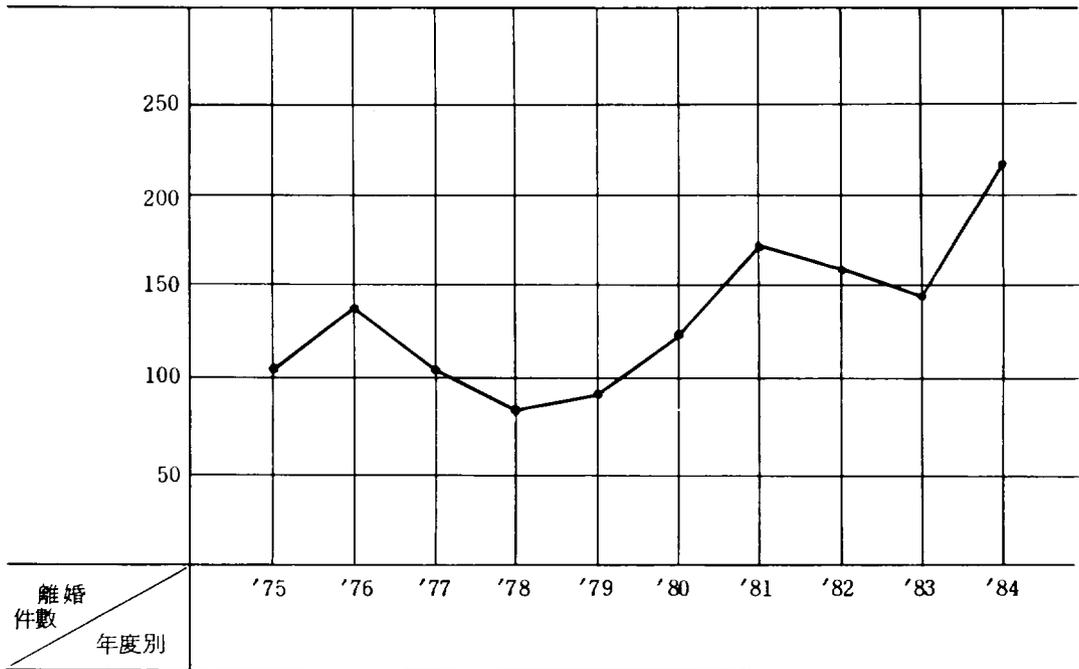
어떻든 濟州道에 있어서 지난 10年間(1975-1984年)의 裁判上 離婚件數는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그 理由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濟州道の 離婚率이 增加하고 있는 要因과 대체로 같은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表Ⅲ의 1〉 裁判上離婚事件累年件數表

年 度 別	件 數
1975	102
1976	134
1977	101
1978	85
1979	91
1980	124
1981	172
1982	156
1983	142
1984	219

備考: 濟州地方法院年譜(1975-1984年) 參照.

〈表Ⅲ의 2〉 裁判上離婚事件累年比較表



備考: 〈表Ⅲ의 1〉參照

한편 <表Ⅰ의 1>과 <表Ⅲ의 1>을 對照·比較해 보면, 지난 10年間 濟州道の 全體 離婚件數 중에서 裁判上離婚件數가 차지하는 比率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75年의 경우 全體離婚件數의 약 46%를 1984年의 경우에는 약 45%를 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960-1966年 사이에 裁判上離婚率이 가장 높았던 1962年의 15.6%²⁵⁾에 比하면 괄목할만한 增加現象인 것이다.

濟州道에 있어서 裁判上離婚率이 높은 理由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생각컨대 離婚을 願하는 者가 夫이나 또는 妻이나에 따라 夫인 경우에는 協議上離婚이, 反對로 妻인 경우에는 裁判上離婚의 蓋然性이 많다는 見解²⁶⁾가 妥當한 것이라면, 濟州道에 있어서는 女性들이 經濟的 生活能力이 强하기 때문에 離婚 후의 生活에 自信을 얻게 됨으로써 女子가 裁判上離婚을 主導하고 있기 때문²⁷⁾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李兌榮 博士는, 濟州道에 있어서는 行方不明을 原因으로 하는 離婚이 많기 때문에 不得已 裁判上離婚이 많게 되는 것이라 한다.²⁸⁾

2. 離婚審判請求者의 性別分析

<表Ⅳ의 1>²⁹⁾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5-1978年 동안에 裁判上離婚事件을 請求한 男女間의 比率은 55:45로서 男子가 女子보다 많았으나, 1979년에는 男女의 比率이 31:69로, 1984년에는 47:53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年間の 累計比率은 46.4:53.6을 나타냄으로써 妻로부터의 請求가 夫의 경우 보다 많음³⁰⁾을 알 수 있다. 적어도 濟州道에 관한 限 夫가 原告인 경우 보다 妻가 原告로서 裁判上離婚을 請求한 경우가 많았던 現象에 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說明이 可能한 것이다.

생각컨대 離婚은 하루 아침에 決行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夫婦間의 不和의 發端 → 深化 → 家出 내지는 逐出로 因한 別居 → 相當한 期間동안의 別居 후에 離婚에 到達하는 順序」를 밟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論理는 裁判上離婚의 경우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한편 離婚을 求하는 者의 性別에 따라 夫인 경우에는 協議上離婚이, 反對로 妻인 경우에는 裁判上離婚의 蓋然性이 길

25) 李兌榮, 前掲書, p. 51 參照.

26)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 岩波書店, 1967, p. 201.

27) 이에 관하여는 <表Ⅳ의 1> 參照.

28) 李兌榮, 前掲書, p. 52 參照.

29) <表Ⅳ의 1>은 본래 裁判上離婚이 인용된 경우의 原告의 性別統計를 의미하는 것이나 一應 이를 裁判上離婚請求者의 性別로 이해하여 分析하기로 한다.

30) 그런데 이러한 現象은 慶北의 尙州·聞慶·醴泉 등과 같은 農村地方의 裁判上離婚事件에 있어서도, 50% 이상이 妻로부터의 請求에 의한 것이라는 事實과 비슷한 것이다. 東亞日報, 1984, 7/24, 10面 參照.

을 것이라는 見解³¹⁾는, 妻가 離婚을 求하는 경우 夫는 不應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결국 法院에까지 가져오지 않는 限 妻가 願하는 離婚事件은 處理되지 않는다³²⁾는 點에서 볼 때에 妥當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生活能力이 강한 濟州女性으로서는 實體가 파괴된 婚姻生活의 持續을 忍耐하기 보다는 차라리 夫와의 婚姻生活의 斷絶을 避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見地에서 裁判上離婚을 請求하는 경우가 많게 된 것이 아닌가 본다.

〈表Ⅳ의 1〉 離婚審判請求者の 性別現況

年 度 別	夫가 原告인 경우의 數(%)	妻가 原告인 경우의 數(%)	裁判上 離婚數
1975	50(49)	52(51)	102
1976	76(57)	58(43)	134
1977	59(58)	42(42)	101
1978	48(56)	37(44)	85
1979	28(31)	63(69)	91
1980	39(31)	85(69)	124
1981	58(34)	114(66)	172
1982	69(44)	87(56)	156
1983	84(59)	58(41)	142
1984	104(47)	115(53)	219
累 年 台 計	615(46.4)	711(53.6)	1,326

備考: 濟州地方法院年譜(1975-1984年) 參照.

3. 離婚當事者の 年齡別分析

離婚當事者の 年齡別 現況處理에 관한 一般的인 方法³³⁾과는 달리 濟州地方法院年譜는 10歲單位(20세 미만 30세 미만…… 50세 이상)로 處理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한 限 離婚當事者の 共通點을 파악하는 데는 適切치 못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表Ⅴ의 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 男子는 30代에 離婚率이 가장 높고(53.7%), 다음은 40代의 21.5%, 20代의 17.8%, 50세 이상의 7.0%로 나타났으며, 女子의 경우에도 30代(50.5%) 40代(22.7%) 20

31) 川島武宜, 前掲書, p.219.

32) 加藤一郎, 前掲書, pp.40-41 參照.

33) 一般的으로는 5歲單位(20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60세 이상)로 處理하고 있다. 金時洙外, 「家族關係學」, 進明文化社, 1981. pp. 167-169. ; 李兌榮, 前掲書, p. 63; 禹華子, “서울 家庭法院의 離婚 및 調停事件에 대한 統計分析,” 「裁判資料 第18輯」, 法院行政處, 1983. pp.442-443 參照.

代(21.6%) 50세 이상(5.2%)의 順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濟州道에 있어서의 年齡別離婚率은 性別에 따라 差異가 거의 없다는 點이다. 따라서 濟州道에 있어서는 거의 同年輩의 夫婦 사이에서 離婚率이 높은 것으로 推斷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지난 10年間に 男子의 경우(75.2%)는 물론 女子의 경우(73.2%)에도 人生의 靑·壯年期인 30代·40代에 離婚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代 50代 이상의 順으로 나타났는데, 그 理由를 보면 靑·壯年期에는 經濟問題 社會的 地位에 대한 懷疑나 不安 또는 性的 不滿 등과 같은 社會的 家庭的인 葛藤現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때이므로 이러한 諸般要素가 家庭不和와 直結됨으로써 離婚의 絶對的 要因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0代의 경우에는 配偶者觀 내지는 人生觀이 確立되지 않은 時期에서의 婚姻이 失敗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50代쯤에 이르면 子女가 成長해 떠나는 時期로서 이루지 못한 希望·꿈, 自身の 失敗를 配偶者 탓으로 돌려 餘生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욕이 생겨 夫婦間의 葛藤이 높아지기 때문에 50代 이상의 年齡層에서도 離婚하는 事例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면서도 그 數가 많지 않은 것은 50代쯤에 이르면 子女 및 社會的 體面을 重視하게 될 뿐 아니라 性問題 등을 自制할 수 있는 年輪에 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表 V의 1〉 離婚當事者の 年齡別 現況

年度別	年齡別 請求者	20歲 未滿	20-29歲	30-39歲	40-49歲	50歲 以上	計
1975	夫		42	47	9	4	102
	妻		42	47	9	4	102
1976	夫		36	68	21	9	134
	妻		31	71	23	9	134
1977	夫		8	49	28	16	101
	妻		21	47	21	12	101
1978	夫		2	59	16	8	85
	妻		21	51	13		85
1979	夫		21	57	13		91
	妻		7	52	32		91
1980	夫		29	83	12		124
	妻		11	78	35		124
1981	夫		36	119	17		172
	妻		23	112	37		172
1982	夫		15	79	45	17	156
	妻		35	75	26	20	156
1983	夫		18	59	46	19	142
	妻		36	53	37	16	142
1984	夫		29	92	78	20	219
	妻	1	59	83	68	8	219
累年合計	夫		236(17.8)	712(53.7)	285(21.5)	93(7.0)	1,326(100)
	妻	1	286(21.6)	669(50.5)	301(22.7)	69(5.2)	1,326(100)

備考: 1. 濟州地方法院年譜(1975-1984年) 參照.
2. () 안의 數字는 累年合計에 대한 構成比(%)임.

4. 離婚當事者の 學歷別 分析

무릇 婚姻의 目的은 經濟的 精神的 肉體的 生活共同體로서의 終生的인 幸福의 追求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圓滿한 婚姻生活를 營爲해 나가기 위하여 夫婦는 相互間에 人格的으로 待遇하고 協助하며 理解해 나감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러한 意味에서, 婚姻生活의 維持와 學歷과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는 것일까? ³⁴⁾ <表Ⅵ의 1>은 1975-1984年間의 離婚當事者の 學歷別 現況을 나타내 주고 있으나, 그것에는 未確認件數가 全體의 3분의 1이상(34.4%)을 占하고 있어서 離婚當事者の 學歷別 現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것의 分析을 하기 위해 確認件數만을 對象으로 하여 <表Ⅵ의 2>를 作成하였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請求人의 學歷³⁵⁾은 高卒이 가장 많고(49.7%), 다음이 中卒(26.1%) 國卒(12.6%) 大卒(9.3%) 無學(2.3%)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被請求人의 경우에도 高卒(38.7%) 中卒(37.6%) 國卒(16.1%) 大卒(3.9%) 無學(3.7%)의 順位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濟州地方法院年譜의 離婚事件原因別表(가) 학력별은 請求人·被請求人에 관한 男女別 分類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事實만으로써 離婚當事者の 教育程度에 관한 正確한 分析은 힘든 것이지만 <表Ⅵ의 2>에 나타난 明白한 事實은,

첫째, 비슷한 學歷水準에 있는 夫婦 사이에서 離婚事例가 많았다는 點이다. 이것은, “시집은 늦어 보내고 장가는 낮추어 가라(夫婦間의 教育程度의 差異가 結婚의 幸福度에 기여한다는 뜻임)”는 俗談의 意味에는 符合할지 모르나, 夫婦間에 學歷水準差異가 있을수록 離婚事例가 높다는 一般的인 見解³⁶⁾와는 反하는 現象(事實)으로서 그 理由를 說明하기는 어려우나 學歷水準이 비슷한 夫婦 사이에서는 같은 程度의 利己心(self-interest)이 彼此間에 常存하여 결국 婚姻生活의 維持에 필요한 協助와 理解가 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比較的 中等教育을 받은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많았고 無學인 경우에는 離婚率이 적었다는 事實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知識水準이 높아지면 現實의 婚姻生活에 대한 欲求不滿에 빠질 可能性이 커질 뿐 아니라 配偶者에 대한 比較對象이 廣範해짐으로써 配偶者의 短點이 露露되어 결국은 離婚으로 突入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無學者의 數가 적은 것은 義務教育의 實施로 因하여 그만큼 國民教育水準이 向上되었음을

34) 一般的으로 主婦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婚姻의 滿足度는 增加하여 婚姻生活의 安定性이 維持된다고 한다.

劉永珠, 「家族關係學」, 韓國放送通信大學 出版部, 1984, p.152 參照

35) 濟州地方法院의 離婚事件原因別表의 (가) 학력별에는 「국민학교 중학교...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中退와 卒業을 포함하는 意味인지가 分明하지 않으나 一應 모두 該當欄의 卒業으로 理解하여 이를 處理하였다.

36) 李兌榮, 前掲書, p.70; 禹華子, 前掲論文, pp.444-445 參照

意味해 중과 동시에 知的 水準이 낮은 無學者로서는 婚姻生活에 대한 不滿을 露出시켜서 離婚을 決行할 能力 내지는 權利意識이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表Ⅵ의 1〉 離婚當事者の 學歷別 現況 (未確認者 포함)

(1975.1 ~ 1984.12)

區分 學歷別	計	請 求 人	被 請 求 人
무 학	52 (2.0)	20 (1.5)	32 (2.4)
국 민 학 교	250 (9.4)	110 (8.3)	140 (10.6)
중 학 교	554 (20.9)	227 (17.1)	327 (24.7)
고 등 학 교	769 (29.0)	432 (32.6)	337 (25.4)
대 학 교	115 (4.3)	81 (6.1)	34 (2.6)
未 確 認 者	912 (34.4)	456 (34.4)	456 (34.4)
總 計	2,652 (100)	1,326 (100)	1,326 (100)

- 備考: 1. 濟州地方法院年譜 (1975 - 1984 年) 參照.
 2. () 안의 數字는 總計에 대한 構成比 (%) 임.

〈表Ⅵ의 2〉 離婚當事者の 學歷別 現況 (未確認者 제외)

(1975.1 ~ 1984.12)

區分 學歷別	計	請 求 人	被 請 求 人
무 학	52 (3.0)	20 (2.3)	32 (3.7)
국 민 학 교	250 (14.4)	110 (12.6)	140 (16.1)
중 학 교	554 (31.8)	227 (26.1)	327 (37.6)
고 등 학 교	769 (44.2)	432 (49.7)	337 (38.7)
대 학 교	115 (6.6)	81 (9.3)	34 (3.9)
總 計	1,740 (100)	870 (100)	870 (100)

- 備考: 1. 〈表Ⅵ의 1〉 參照.
 2. () 안의 數字는 總計에 대한 構成比 (%) 임.

5. 離婚當事者の 職業別 分析

사람은 生存을 위하여 職業을 갖게 마련인 것이고, 職業으로서의 社會的 活動은 職業人의 經濟的 收入程度 · 對人關係 · 性格形成 등에 直 · 間接的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職業이 婚姻生活에

미치는 영향은 至大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職業은 果然 婚姻生活의 解消에 어떤 妻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일까?

離婚當事者의 學歷別分析에서와 同一한 方法으로 作成되어진 <表Ⅶ의 2>에 의하면, 다음의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離婚事件을 請求하여 認容된 男子의 職業으로는 商業이 가장 많고(45.3%), 그 다음이 農漁業(26.8%) 會社員(9.2%) 從業員(4.5%) 勞務者(4.2%) 公務員(3.4%) 無職(3.2%) 自由業(2.4%) 其他(0.5%) 軍人 및 教育者(0.3%)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女子의 경우에도 商業이 가장 많고(35.3%) 無職(35.1%) 農漁業(13.7%) 自由業(7.4%) 從業員(2.9%) 公務員(2.2%) 會社員(1.8%) 其他(1.0%) 教育者(0.4%) 勞務者(0.2%)의 順位를 보여주고 있다.

被請求人으로서의 男子의 職業은 商業(27.4%) 無職(25.9%) 農漁業(16.7%) 勞務者(13.7%) 會社員(9.2%) 自由業(2.5%) 其他(2.2%) 從業員(1.6%) 公務員(0.8%)의 順인데 比해 女子의 경우에는 無職(39.7%) 商業(28.7%) 農漁業(19.2%) 自由業(4.5%) 從業員(4.2%) 其他(2.9%) 勞務者(0.8%) 會社員(0.5%)의 順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는 商業에 從事하는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가장 많다는(33.8%) 事實³⁷⁾에서 職業으로서의 商業은 婚姻生活의 破綻과 關聯이 있음을 指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컨대 職業으로서의 商業은 販賣促進 내지는 顧客接待의 性格上 酒席·料亭出入의 機會가 잦아지게 마련이고, 事業上의 出張 등으로 因하여 夫婦가 長期間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脫離할 可能性이 많고, 또한 職業的인 性格上 時間的으로 餘裕있는 生活의 爲가 어려우므로 婚姻生活의 倦怠와 疲勞를 招來할 可能性이 많게 된다. 결국 이러한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作用하게 되면 夫婦間의 葛藤·마찰·對立을 불러 일으켜 結果적으로 婚姻生活의 破綻이 招來되어 離婚이 執行되는 것이 아닌가 본다.³⁸⁾

둘째, 無職인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두번째로 많다는(26.6%) 事實에 대하여는, 無職은 보통 家政經濟의 貧困과 不安定한 家庭生活環境의 要因을 招來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男便이 職業없이 婚姻生活를 爲해 나가는 경우에는(25.9%) 그것이 原因이 되어(왜냐하면 職業은 生存手段으로 볼 수 있으니까) 夫婦 사이에 不和·葛藤·마찰을 불러 일으키게 됨으로써 結果

37) 이러한 事實에서도 濟州女性의 強靱한 生活力 내지는 勤勉性이 立證이 되는 셈이다. 그 點은 商業에 從事하는 女子(妻)가 原告로서 裁判上離婚을 請求하여 認容된 事例가 가장 많은 比率(35.3%)을 차지하고 있는 事實에서 明白해진다.

38) 李兌榮, 前揭書, p. 71 參照.

적으로 婚姻生活의 破綻을 招來하여 離婚으로 突入케 되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農漁業에 從事하는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세번째로 많다는(18.6 %) 事實³⁹⁾에서 濟州道の 農漁村地域에는 傳統的인 儒敎의 家族價値觀의 缺如 내지는 稀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儒敎의 家族價値觀의 缺如는 個人主義的 自由主義的 離婚觀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破綻된 婚姻生活의 忍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婚姻生活의 解消를 決行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 軍人의 경우에는 1975年度에 단 1件(0.1 %)을, 教育者인 경우에도 1975年과 1978年度에 도합 3件(0.2 %)만을 보여주고 있는 事實에서 軍人과 教育者인 경우에 離婚한 事例가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職業으로서의 軍人과 教育者는 安定된 婚姻生活의 維持와 關聯이 있다는 指摘 보다는 團體組織的·社會的 體面 때문에 離婚한 事例數가 적었을 것이라는 說明이 妥當한 것이다.

< 表Ⅶ의 1 > 離婚當事者의 職業別 現況(未確認者 포함)

(1975.1~1984.12)

區分 職業別	計	請 求 人			被 請 求 人		
		計	男	女	計	男	女
농 어 업	324 (12.2)	169 (12.8)	102 (16.6)	67 (9.4)	155 (11.7)	82 (11.5)	73 (11.9)
노 무 자	87 (3.3)	17 (1.3)	16 (2.6)	1 (0.1)	70 (5.3)	67 (9.4)	3 (0.5)
종 업 원	55 (2.1)	31 (2.3)	17 (2.8)	14 (2.0)	24 (1.8)	8 (1.1)	16 (2.6)
상 업	588 (22.2)	345 (26.0)	172 (28.0)	173 (24.3)	243 (18.3)	134 (18.9)	109 (17.4)
군 인	1 (0.0)	1 (0.1)	1 (0.2)				
회 사 원	91 (3.4)	44 (3.3)	35 (5.7)	9 (1.3)	47 (3.5)	45 (6.3)	2 (0.3)
교 육 자	3 (0.1)	3 (0.2)	1 (0.2)	2 (0.3)			
공 무 원	28 (1.1)	24 (1.8)	13 (2.1)	11 (1.6)	4 (0.3)	4 (0.6)	
자 유 업	74 (2.8)	45 (3.4)	9 (1.5)	36 (5.1)	29 (2.2)	12 (1.7)	17 (2.8)
무 직	462 (17.4)	184 (13.4)	12 (2.0)	172 (24.2)	278 (21.0)	127 (17.9)	151 (24.6)
기 타	29 (1.1)	7 (0.5)	2 (0.3)	5 (0.7)	22 (1.7)	11 (1.6)	11 (1.8)
미확인자	912 (34.4)	456 (34.4)	235 (38.2)	221 (31.1)	456 (34.4)	221 (31.1)	235 (38.2)
總 計	2,652 (100)	1,326 (100)	615 (100)	711 (100)	1,326 (100)	711 (100)	615 (100)

備考: 1. 濟州地方法院年譜(1975-1984年)의 各 職業別 參照.

2. () 안의 數字는 總計에 대한 構成比(%)임.

39) 물론 濟州道民의 生業으로서는 아직까지도 農漁業人口가 絕對多數이기 때문에 18.6%는 그렇게 많은 事例數가 아니라는 지적도 可能할 것이다.

〈表Ⅶ의 2〉 離婚當事者의 職業別 現況 (未確認者 제외)

(1975.1~1984.12)

區分 職業別	計	請 求 人			被 請 求 人		
		計	男	女	計	男	女
농 어 업	324(18.6)	169(19.4)	102(26.8)	67(13.7)	155(17.8)	82(16.7)	73(19.2)
노 무 자	87(5)	17(2.0)	16(4.2)	1(0.2)	70(8.1)	67(13.7)	3(0.8)
종 업 원	55(3.2)	31(3.6)	17(4.5)	14(2.9)	24(2.8)	8(1.6)	16(4.2)
상 업	588(33.8)	345(39.7)	172(45.3)	173(35.3)	243(27.9)	134(27.4)	109(28.7)
군 인	1(0.1)	1(0.1)	1(0.3)				
회 사 원	91(5.2)	44(5.1)	35(9.2)	9(1.8)	47(5.4)	45(9.2)	2(0.5)
교 육 자	3(0.2)	3(0.3)	1(0.3)	2(0.4)			
공 무 원	28(1.6)	24(2.8)	13(3.4)	11(2.2)	4(0.5)	4(0.8)	
자 유 업	74(4.3)	45(5.2)	9(2.4)	36(7.4)	29(3.3)	12(2.5)	17(4.5)
무 직	462(26.6)	184(21.2)	12(3.2)	172(35.1)	278(32.0)	127(25.9)	151(39.7)
기 타	29(1.7)	7(0.8)	2(0.5)	5(1.0)	22(2.5)	11(2.2)	11(2.9)
총 계	1,740(100)	870(100)	380(100)	490(100)	870(100)	490(100)	380(100)

備考: 1. 〈表Ⅶ의 1〉 參照.
 2. () 안의 數字는 總計에 대한 構成比(%)임.

6. 婚姻繼續期間別 分析

一般的으로 말하는 婚姻生活의 危機(倦怠期)는 存在하는 것일까? 存在한다면 離婚은 주로 婚姻生活 후 몇年 사이에서 決行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斷片的이나마 이를 實證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離婚當事者의 婚姻期間別 現況을 나타내고 있는 〈表Ⅷ의 1〉에 의하면,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는 婚姻 후 5年 이상~10年 미만의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數가 裁判上離婚 全體件數의 32.7%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年 이상~3年 미만의 夫婦의 경우로서 31.4% 10年 이상의 경우에 29.0%를, 婚姻 후 2年 미만의 夫婦의 경우에는 6.9%로서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어떤 한 社會에 있어서 甲男 乙女가 夫婦로서 結合한 目的 내지는 意義, 家族을 形成해 나가는 婚姻關係의 社會的 意義,⁴⁰⁾ 男女의 身分關係의 解消가 갖는 意義 등⁴¹⁾을 明白히 밝히지

40) 예컨대 男女가 연애결혼을 하면 夫婦感情이 로맨틱한 사랑에 의해 維持되는 婚姻의 初期에는 離婚事例가 적고, 婚姻關係가 生活關係에로 깊이 들어가는 中年期 즈음에야 現태가 到來함으로써 離婚事例가 늘어난다. 이에 反하여 연애결혼에 의하지 않은 男女間의 결합인 경우에는 婚姻초기에는 夫婦感情이 充分히 育成되지 못하므로 離婚事例가 많고, 혼인계속기간이 점차적으로 경과할 수록 夫婦感情이 充分히 育成되어 이혼사례는 그만큼 적어진다고 한다. 李兌榮, 前揭書, pp.77-79參照.

41) 上揭書, p.79에서 引用.

않고 離婚當事者の 婚姻繼續期間의 現況만으로써 裁判上離婚의 現象(事實)을 說明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表Ⅷ의 1>에 의해 알 수 있는 明白한 事實은,

첫째, 濟州道에 있어서는 婚姻 후 5年~10年 사이가 婚姻解消의 可能性이 가장 큰 婚姻生活의 危險時期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婚姻후의 5年~10年 사이는 家族周期段階⁴²⁾에서 말하는 이른바 夫婦前期 내지는 親子同居期の 初期에 해당되는 時期로서 이 期間에는 男便의 社會的 地位가 낮고 不安定하며 經濟的으로 潤澤하지 못한 데서 오는 不安定된 婚姻生活環境과 子女의 出產 및 理想이 높은 養育에서 惹起되는 一貫된 緊張에서 오는 夫婦間的 즐거움의 喪失 등이 복합적으로 作用함으로써 이것이 婚姻破綻의 要因이 되는 것이라는 一般的인 지적 외에도, 특히 <表Ⅷ의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時期에는 不正行爲(grave misconduct)⁴³⁾가 가장 많이 恣行되었고(48.9%), 惡意의 遺棄(malicious desertion)가 많았으며(26.7%), 生死不明의 事故가 꽤나 있었기(11.1%) 때문에 婚姻后 5年~10年 사이에서 離婚率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냐는 實證的 指摘이 可能할 것이다.

둘째, 婚姻生活 10年 이상을 經過한 소위 中年 이상의 夫婦 사이에서 離婚率이 꽤나 높다는 點이다. 생각컨대 婚姻 후 10年 이상이 되면 대개 家族周期段階에서 말하는 소위 親子同居期の 後期·夫婦後期에 해당되는 時期로서 이 期間에는 一般的으로 社會的 地位가 높게 되어 收入이 늘어나는 反面에 生活費의 減少로 因하여 생활係數가 低下됨으로써 經濟的으로 安定된 婚姻生活의

<表Ⅷ의 1> 離婚當事者の 婚姻期間別 現況

(1975.1~1984.12)

婚 姻 期 間	請 求 人 數	計 에 大 한 構 成 比
1 年 미만	31	2.3 %
1 年 이상 2 年 미만	60	4.5 %
2 年 이상 3 年 미만	115	8.7 %
3 年 이상 5 年 미만	301	22.7 %
5 年 이상 10 年 미만	434	32.7 %
10 年 이상	385	29.0 %
計	1,326	100 %

備考: 濟州地方法院年譜(1975-1984年)의 4) 사유별 및 동거기간 參照.

維持는 可能하나 이에 反하여 餘假를 善用하지 못하여 非倫理的 生活를 恣行케 됨으로써 그것이 婚姻破綻을 招來하여 결국은 離婚에로 突入케 되는 것이라는 一般的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특히

42) 이에 관한 詳細는 金疇洙外, 前揭書, pp. 55-61 參照.

43) 이에 관한 詳細는 拙稿, 前揭論文, pp. 90-92 參照.

〈表Ⅷ의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婚姻生活 10年 이상이 경과된 夫婦間의 離婚事件 中 不正行爲로 인한 것이 全體件數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를 實證의으로 說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表Ⅷ의 2〉 婚姻의 解消에 있어서 그 事由와 婚姻期間別 現況 (1975.1~1984.12)

事由別	婚 姻 期 間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不正行爲	7 (22.6)	17 (28.3)	44 (38.3)	160 (53.2)	212 (48.9)	184 (47.8)
惡意의 遺棄	13 (41.9)	16 (26.7)	38 (33.0)	86 (28.6)	116 (26.7)	114 (29.6)
虐 待	1 (3.2)	1 (6.7)	2 (1.7)	5 (1.7)	6 (1.4)	9 (2.3)
虐待를 받았을 때	4 (12.9)	14 (23.3)	14 (12.2)	22 (7.3)	37 (8.5)	28 (7.3)
3年 이상의 不明	4 (12.9)	8 (13.3)	13 (11.3)	22 (7.3)	48 (11.1)	32 (8.3)
其 他	2 (6.5)	4 (6.7)	4 (3.5)	6 (2.0)	5 (3.5)	18 (4.7)
計	31 (100)	60 (100)	115 (100)	301 (100)	434 (100)	385 (100)

備考 : 1. 濟州地方法院年譜 (1975-1984年)의 事由別 및 동거기간 參照
2. ()안의 數字는 計에 대한 構成比(%)임.

7. 子女數別 分析

從來 東洋社會에서의 婚姻은 家系承繼에 目的을 둔 家父長制 家族制度에 봉사하는 것으로만 存在하였으며, 그리고 男女의 身分關係의 結合·解消가 宗教에 의하여 統制되었던 古代西洋社會에서의 婚姻은 義務的인 것⁴⁴⁾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婚姻이란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個人的인 幸福과 家族의 社會的인 安定의 追求를 위해 存在하는 社會制度라고 할 수 있다.⁴⁵⁾

한편 夫婦는 婚姻에 의하여 出生한 子女를 養育할 責任이 있으며(民法 § 974 參照)⁴⁶⁾ 大部分

44) "子孫을 얻기 위해 結婚한다"는 古代 로마人的 結婚觀이나, "嫡男을 얻기 위해 結婚한다"는 古代 그리스人的 結婚觀은 從來 東洋社會에서의 結婚觀과 흡사한 것이다.

45) 婚姻制度의 進化에 관하여는 金容漢, 「全訂版 親族相續法論」, 博英社, 1963, pp. 143-149; 金麟洙, 「註釋 親族·相續法」, 法文社, 1960, pp. 98-102 參照

46) "父가 子를 扶養할 義務를 負擔하는 것은 韓國에 있어서의 慣習으로서 그 子가 父의 집에 있거나 없거나 또 他에 戶主가 있거나 없거나 또 그 子의 母가 존재하거나 없거나에 의하여 그 義務에 區別이 없는 것"이라 한다.
朝高法院 1912.6.28 判決.

의夫婦는 子女의 健康한 人間的 成長을 위해 關心과 精誠을 쏟게 되므로 비록 婚姻의 破綻이 夫婦 사이에 存在하는 경우에도 子女 때문에 쉽게 離婚을 決行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子女의 有無가 離婚의 決行과 어떤 關係가 있는 것일까? 離婚當事者의 子女數別分析을 통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Ⅱ의 2〉에 의하면,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는 子女를 가진 夫婦의 離婚件數가 確認된 裁判上離婚件數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子女 2명을 둔 夫婦가 32.2%로서 가장 많은 離婚事例數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子女 1명을 둔 夫婦가 28.1%, 子女數 3명이 23.9%, 5명 이상을 둔 夫婦인 경우에는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子女를 두지 않은 夫婦의 경우에는 12.8%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子女數 3명 이내의 夫婦인 경우에 가장 離婚率이 높았다는 指摘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離婚當事者의 婚姻期間別分析에서 얻어진, 婚姻 후 5년 이상~10년 미만의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가장 많았다는 事實과 脈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婚姻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子女數 3명을 두게 될테니까)

둘째, 無子인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數가 적지 않다는 點이다. 생각컨대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는 子女있는 夫婦와 子女없는 夫婦의 比率統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2.8%라는 數值만으로 (全體件數에 비하면 적은 數字임) 어떠한 解釋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學說⁴⁷⁾ 判例(大法判 1982.11.23, 82므 36)가 妊娠不能(즉 無子)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民法 § 840의 6號)로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事實上 子女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婚姻破綻을 招來하여 離婚을 決行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指摘을 한다면 지나친 論理飛躍일까? 어 떻든 子女가 없다는 事實이 離婚의 決行에 決定的 作用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子女가 없으면 그만큼 離婚이 容易하게 이루어질 것임은 分明하다 할 것이다.

셋째, 5명 이상의 子女를 둔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많지 않은 事實에 대하여는, 子女에 대한 體面 때문에 쉽사리 離婚을 決行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表Ⅱ의 1〉 離婚當事者의 子女數別 現況(未確認者 포함)

(1975.1~1984.12)

子女數	無子	1人	2人	3人	5인이상	未確認者	計
請求人數	111	244	280	208	27	456	1,326
計에 대한구성비	8.4%	18.4%	21.1%	15.7%	2.0%	34.4%	100%

備考: 濟州地方法院年譜(1975-1984年)의 (다) 직업별 參照

47) 金崎洙, 前掲書, p. 226 參照

〈表Ⅱ의 2〉 離婚當事者の 子女數別 現況 (未確認者 제외)

(1975.1~1984.12)

子女數	無子	1人	2人	3人	5人 이상	計
請求人數	111	244	280	208	27	870
計에 대한 구성비	12.8%	28.1%	32.2%	23.9%	3.1%	100%

備考: 〈表Ⅱ의 1〉參照.

8. 離婚事由別 分析

離婚事由와 關係해서 볼 때에 오늘날 世界各國의 離婚法의 推移는 有責主義(主觀主義)에서 破綻主義(目的主義)에로 接近해 가는 傾向에 놓여있다.⁴⁸⁾ 한편 裁判上離婚原因(Gesetzliche Scheidungsgründe)을 規定한 民法 §840는 第1號 내지 第5號에서 有責的 離婚原因(當事者의 一方이 有責인 경우에 비로소 離婚請求가 可能하다)을 具體的으로 例示하고, 第6號에서 破綻主義離婚原因(當事者의 一方이 반드시 有責일 必要는 없고 婚姻生活의 계속적 營爲가 困難한 客觀的 事情의 存在로써 離婚이 可能하다)을 抽象的으로 들고 있는데,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는 有責主義(Verschuldungsprinzip)와 破綻主義(Zerrüttungsprinzip)의 法定原因 中에서 어느 것이 支配的으로 作用했는가? 離婚事由의 具體的인 分析·檢討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離婚事由別 現況을 나타내고 있는 〈表Ⅱ의 1〉에 의하면, 請求人이 主張한 離婚事由(認容된 事由임)로는 配偶者의 不正行爲가 47.1%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配偶者의 惡意의 遺棄로서 28.9%,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不當한 待遇를 받은 경우가 9.0%, 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인 경우 3.7%,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으로부터의 不當한 待遇를 받은 경우 1.8%의 順位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男子가 請求人인 경우의 事由로는 不正行爲(42.8%) 惡意의 遺棄(34.5%) 3年 이상의 生死不明(12.2%) 其他(5.9%)의 順으로 離婚事例가 많았던 데 비해 女子가 請求人인 경우에는 不正行爲(50.8%) 惡意의 遺棄(24.1%) 自己의 直系尊屬에 대한 심히 不當한 待遇(14.1%) 3年 이상의 生死不明(7.3%)의 順位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事實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分析이 可能할 것이다.

첫째,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는 配偶者의 不正行爲로 인한 裁判上離婚事例가 가장 많았다는 事實로서(이러한 現象은 1982年度 서울家庭法院에서의 離婚審判請求事件의 離婚事由別現況⁴⁹⁾

48) 이에 관한 詳細는 抽稿, 前揭論文, pp. 86-87 參照.

49) 禹華子, 前揭論文, p. 453 參照.

〈表 X의 1〉 認容된 離婚事由別 現況

(1975.1~1984.12)

離婚事由 請求人	請求人		計
	男	女	
配偶者의 不正行爲 (民法 § 840의 1號)	263 (42.8)	361 (50.8)	624 (47.1)
惡意의 遺棄 (民法 § 840의 2號)	212 (34.5)	171 (24.1)	383 (28.9)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으로부터의 不當한 待遇 (民法 § 840의 3號)	10 (1.6)	14 (2.0)	24 (1.8)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不當한 待遇를 받은 경우 (民法 § 840의 4號)	19 (3.1)	100 (14.1)	119 (9.0)
3年 이상의 生死 不明 (民法 § 840의 5號)	75 (12.2)	52 (7.3)	127 (9.6)
其他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 한 事由 (民法 § 840의 6號)	36 (5.9)	13 (1.8)	49 (3.7)
總 計	615 (100)	711 (100)	1,326 (100)

備考: 1. 濟州地方法院年譜 (1975-1984年)의 (나) 사유별 参照.

2. () 안의 數字는 總計에 대한 構成比 (%) 임.

과도 비슷한 것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配偶者의 不正行爲를 이유로 男子가 請求한 경우가 39.5% 女子가 請求한 경우가 46.3%임) 그 중에 妻의 不正行爲를 이유로 하여 夫가 離婚審判을 求한 경우 (認容된 경우임) 가 42.8%를 차지하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는, 離婚當事者의 職業別分析에 나타난 바와 같이 (被請求人으로서의 女子가 職業을 가진 경우는 57.9%임을 생각하라) 女子가 職業을 가져 社會生活을 自由奔放하게 하다 보면 夫 이외의 男子와의 接觸의 機會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결국 不正行爲 (通說·判例는 不正行爲의 概念을 단순한 姦通에 限하지 않고 夫婦間의 貞操義務에 反하는 一切의 行爲로 理解한다) 를 招來케 되는 것으로 理解할 수가 있고, 이 點은 性開放風潮에 따른 性에 대한 認識度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夫의 不正行爲를 이유로 하여 妻가 離婚審判을 請求한 경우 (認容된 경우임) 가 50.8%를 차지하고 있음은, 濟州道女性들이 從來의 順從·忍耐라는 家父長制社會에서의 女性像에서 벗어나 子息 때문에 婚姻生活을 堪耐하려는 것이 아니라 生活力에 自信이 있음으로써 결국 精神的인 解放을 追求하려는 個人主義的인 離婚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惡意의 遺棄를 이유로 한 裁判上離婚事例數가 두번째로 많았다는 事實인데, 惡意의 遺棄란

正當한 이유없이(without reasonable cause) 配偶者의 一方이 同居·扶養·協助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表X의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夫(24.1%) 보다는 오히려 妻(34.5%)가 男便에 대한 同居·協助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分析이 可能할 것이다.

세째, 妻가 請求人인 경우에 §840의 4號를 이유로 離婚審判을 求한 事例(認容된 경우임)가 夫의 경우 보다 많다는 事實인데(이러한 事實만으로 어떤 解釋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840의 4號는 夫가 장인·장모를 虐待하거나 妻가 媳父母를 虐待하는 경우 등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이 事實은 결국 濟州道에 있어서는 妻가 媳父母를 虐待하는 경우 보다는 오히려 夫가 장인·장모를 虐待하여 離婚으로 突入케 되는 事例가 많았다는 點을 指摘해 주는 것 같다.

네째, §840의 5號를 이유로 離婚이 認容된 경우가 9.6%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事實은 5號의 性格(5號를 이유로 하는 離婚審判은 裁判上離婚만을 請求하게 된다)에서 볼 때에 아주 적은 事例로 볼 수 밖에 없으며(그러나 1963 - 1965年間の 裁判上離婚事例 중에는 5號事由가 가장 많았음)⁵⁰⁾, 그나마도 男子(夫) 보다는 女子(妻)의 生死不明인 경우가 많은 것은 生活力이 강한 女子들이 外地에로 潛水 등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섯째, §840의 3號事由로 因한 離婚事例가 가장 적다는 事實인데(1.8%), 이 點은 夫婦가 그 直系尊屬과 같이 生活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濟州道の 核家族制의 特徵으로 因하여 결국 姑婦間的 葛藤·對立이 露呈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指摘을 해증과 아울러 男女平等(同權) 思想이 婚姻生活에서 實現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說明해 주는 것 같다.

여섯째, §840의 6號事由를 이유로 離婚한 事例가 妻(1.8%)에 비해 夫(5.9%)의 경우가 많은 事實에서 女子 보다는 男子들이 비교적 離婚原因에 관한 破綻主義的 離婚法意識에 투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反面에 女子들은 一般的으로 有責主義的 法定原因을 理由로 하여서만 裁判上離婚請求를 主導하고 있다는 分析이 可能할 것 같다.

9. 慰籍料請求額別 分析

裁判上離婚請求事件의 慰籍料請求額別 現況을 나타내고 있는 <表XI의 1>에 의하면, 請求人이 男子인 경우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請求한 경우가 8件으로서 全體請求件數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額數를 請求한 경우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2件으로서 14%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 請求人이 女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請求한 경우가 18件(28%)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경우로서 15件(23%)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金額을 請求한 경우는 1억원의 1件(2%)

50) 李兌榮, 前掲書, p.137 參照

임을 알 수 있다.

慰籍料請求事件의 總件數에 대한 男女間の 請求比率은 17.7:82.3 을 나타내고 있는데,⁵¹⁾이 事實은 결국 男子가 裁判上離婚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慰籍料를 請求하는 事例가 적은데 反하여(그나마 慰籍料를 請求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가 全體請求件數의 79% 임) 女子가 裁判上離婚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慰籍料請求를 當然視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表Ⅺ의 1〉 裁判上離婚請求事件의 慰籍料請求額別 現況

(1975.1 ~ 1984.12)

請 求 額	請 求 人 數			請 求 額	請 求 人 數		
	男	女	計		男	女	計
1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	1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	8	16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3	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	18	21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	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	11	12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1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	15	17	1억원		1	1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6	6	總 計	14	65	79

備考: 濟州地方法院 家事 乙·丙類審判事件簿(1975-1984年)參照.

10. 離婚審判請求者の 居住地域別 分析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은 一定한 場所에 生活의 根據地를 定해 놓고 他人과의 만남의 關係를 통해서 社會生活을 營爲해 나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生活空間으로서의 居住地(域)이 婚姻의 解消와 어떤 關聯이 있는 것일까? 이를 實證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裁判上離婚審判請求者の 居住地域別 現況을 나타내고 있는 〈表Ⅻ의 1〉에 의하면, 지난 10年間 濟州道에 있어서의 裁判上離婚은 市地域(濟州市 및 西歸浦市)에 居住하는 者가 請求한 경우가 全體請求件數의 57.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고, 그 다음이 邑·面 地域居住者로서 39.7%, 日本을 포함한 其他地域居住者인 경우에는 2.7%를 보여 줌으로써 市地域居住者들이 邑·面地域

51) 그러나 1982年度의 서울家庭法院에서의 慰籍料請求事件의 總件數에 대한 男女의 請求比率은 6.5:93.5로서 女子의 請求比率이 압도적으로 높다.
禹華子, 前揭論文, p. 457 參照.

居住者에 비해 비교적 進步的인 離婚觀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市地域居住者가 裁判上離婚을 請求한 경우가 많은 事實에 대하여는, 이미 考察한 離婚當事者의 職業(商業從業者가 가장 많았음)·離婚事由(不正行爲를 이유로 한 離婚事例가 가장 많았음)·學歷別(中等教育을 받은 夫婦 사이에서 離婚한 事例가 가장 많았음) 分析에 나타난 事實과 關聯해서 볼 때에, 一般的으로 市地域의 職業分布는 商業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商業으로서의 職業活動과 아울러 市地域의 住居·生活環境이 邑·面地域(아무래도 市地域에 비해 農·漁村地域이 많은 點을 생각하라) 보다는 不正行爲 내지는 婚姻生活의 破綻을 誘發할 要因을 비교적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컨대 市地域에 居住한다는 事實이 婚姻의 解消에 重要한 要因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都市地域의 諸般環境要因으로 因하여, 農·漁村이 많은 邑·面地域에 居住하는 경우 보다는 최소한 男女間의 身分關係를 解消할 可能性이 높은 것만은 分明하다 할 것이다.

〈表Ⅻ의 1〉 離婚審判請求者의 居住地域別 現況

(1975.1 ~ 1984.12)

地 域	市 地 域	邑 地 域	面 地 域	其他(日本)	總 計
請 求 人	824(57.6)	264(18.5)	303(21.2)	39(2.7)	1,430(100)

備考: 1. 濟州地方法院家事 乙·丙類 審判事件簿(1975-1984年)參照
2. ()안의 數字는 總計에 대한 構成比(%) 임.

IV . 結 論

이상에서 濟州統計年譜와 濟州地方法院年譜 등의 各種統計資料를 土臺로 하여 지난 10年間(1975-1984年)의 濟州道에 있어서의 離婚率을 算出·分析하여 이를 全國 平均離婚率과 比較하고, 裁判上離婚事件에 나타난 離婚의 實態를 多角的으로 分析·說明함으로써 離婚法의 法社會學的 研究를 試圖해 보았다.

本稿의 結論으로서 離婚의 濟州道의 特徵을 보면,

첫째, 濟州道에 있어서의 離婚의 絕對數와 人口에 대한 離婚率은 해마다 增加一路를 걸어왔으며, 또한 全國 平均離婚率 보다 높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었다.

둘째, 裁判上離婚에 관한 離婚當事者의 性別, 年齡別, 學歷別, 職業別, 婚姻繼續期間別, 子女數別 分析을 통해 나타난 離婚當事者의 共通의 特徵은, ① 男子(夫) 보다는 女子(妻)가 裁判上離婚을 主導하고 있다는 事實, ② 男女를 不問하고 人生의 靑·壯年期인 30代·40代에 離婚하는 事例가

가장 많다는 點, ③ 비슷한 學歷(中等教育) 水準에 있는 夫婦 사이에서 離婚하는 事例가 많다는 點, ④ 商業從事者의 夫婦 사이에서 離婚의 事例가 많다는 點, ⑤ 婚姻 후 5~10年 사이에 離婚하는 事例가 많다는 點, ⑥ 子女數 3명 內외의 夫婦인 경우에 離婚率이 가장 높다는 事實 등을 發見할 수 있었다.

세째, 離婚當事者의 離婚事由別로는 不正行爲(民法 § 840의 1號) 惡意의 遺棄(民法 § 840의 2號)의 順으로 離婚한 事例가 많았다는 事實에서 裁判上離婚에 관한 破綻主義 離婚原因 보다는 有責主義의 離婚原因이 支配的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本稿는 法社會學的 接近方法에 의한 離婚法研究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을 뿐 協議上離婚 調停離婚의 實態를 다루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離婚當事者의 共通의 特徵을 發見하지 못했고, 또한 濟州道와 類似한 生活領域 내지는 法文化圈에 있는 他地域과의 比較研究를 取扱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問題들은 後日의 研究課題로 두기로 한다.

Eine Betrachtung über Ehescheidung (II)

— Die Analyse des Wirklichen Standes der Ehescheidungsrate —
 Und der Ehescheidung durch Gericht auf der Che-Ju Insel

Han Sam-in

Inhaltsverzeichnis

- I. Einleitung – Fragweite des Themas
- II. Ehescheidungsrate auf der Che-Ju Insel
- III. Analyse des Wirklichen Standes der Ehescheidung durch Gericht
- IV. Schluß

Zusammenfassung

Auf den Gründen der verschiedenen Statistiken der Chroniken von der Che-Ju Insel und dem Landesgericht Che-Ju handelt diese Arbeit von der rechtssoziologischen Forschung des Ehescheidungsrechts, damit diese Arbeit die letzten Zehn jährigen (1975–1984) Ehescheidungsraten ausrechnet, analysiert und mit der durchschnittlichen Ehescheidungsrate in ganz Korea vergleicht, um die wahren Sachlage der Ehescheidungsrate zu analysieren, die sich in Fällen der Ehescheidungen durch Gericht zeigen.

Wenn man als Schluß die Merkmale der Ehescheidung auf der Che-Ju Insel betrachtet:

1. Auf der Che-Ju Insel vermehrt sich die Anzahl der Ehescheidung und die Ehescheidungsrate ist höher als die durchschnittlichen Ehescheidungsrate in ganz Korea.
2. In den Fällen der Ehescheidungen durch Gericht verlangen die Frauen die Ehescheidung mehr als die Männer. Die gesetzlichen Scheidungsgründen sind zuerst Treubruch der Ehe (Koreanisches BGB § 840-1) am häufigsten und das böswilliges Verlassen (Koreanisches BGB § 840-2). Aus diesen Punkten kann man es rechnen, daß Bewohner auf der Che-Ju Insel mehr von den Verschuldungsprinzipien als von den Zerrüttungsprinzipien beeinflusst sind.